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890 발의연월일: 2020. 8. 11.

발 의 자:인재근·김영진·송갑석

최혜영 · 서영석 · 홍성국

최종윤 · 송옥주 · 문진석

이탄희 · 소병훈 · 이장섭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을 발생하게 했거나 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유치원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는 어린이가 확인되었는데도 이를 지자체장에게 지연하여 보고하고, 일부보존식도 보관하지 않아 식중독균 원인 규명과 피해확산 예방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나, 그 처벌기준은 500만 이하의 과태료에 그치는실정임.

이에 식중독 환자나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등이 지자체장에게 식중독 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집단급식소에서 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총

리령에서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역학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보존식을 훼손 또는 폐기하지 못하도록 정하는 것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집단급식소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2항 및 제101조제1항 신설).

법률 제 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보관·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제101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 2.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8조(집단급식소) ① (생 략)	제88조(집단급식소) ① (현행과 같
	<u>ㅇ</u>)
②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	2
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	
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 <신 설></u>	2의2.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보
	관·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
	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
	까지 폐기・훼손하여서는 아
	니 되고, 원인규명을 위한 행
	위를 방해하지 말 것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01조(과태료) <u><신 설></u>	제101조(과태료) <u>①</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u>1.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u>
	2.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행 안 혂 개 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2) -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40조제1항 및 제3 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 포함한다) 제1항을 위반한 자 1의2. 삭 제 1의3. ~ 9. (생략) 1의3. ~ 9. (현행과 같음) 10.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삭 제>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